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수 신 전 조합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 송부 병행문서]
참 조 소각시설 관리담당
제 목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안) 설정연구
관련 대책회의 개최 안내 [긴급]



1. 한공조 2017-493호[「2020년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연구용역」의
견수령 2차 회의 참석 요청, '17.10.18] 관련입니다.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2020년 배출시설 및 배출
허용기준 설정 연구」 용역은 2020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
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폐기물 소각시설도 현행 기준 대비 약 20%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동 연구용역 관련 의견수렴 1,2차 회의에
참석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소각업계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였으나 반영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업계 의견 반영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오니, 불임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17.10.31(화)까지 FAX(02-718-7171) 송부바랍니다.

- 아 래 -

□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관련 대책회의

가. 일 시 : 2017년 11월 1일(수) 14:00 ~ 16:00

나. 장 소 : 조합 회의실

다. 참석대상 : 조합원사 실무자

불 임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안) 설정연구(Ⅱ) 주요내용 1부.

2. 참가신청서 1부. 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담당 오은석 대리 김종호 팀장 한인성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진원기 이사장 박무중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17 - 510호 (2017. 10. 30) 접수

우 07573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66, 11층(등촌동, 우리벤처타운)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안) 설정연구() 주요내용

I 주요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폐기물 소각시설 및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 *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임.

II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세부현황

1. 가스형태의 물질(공통적용 기준)

내 용	대기오염물질	현 행(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연구용역 초안(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별표8)	암모니아 (ppm)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형 연료제품 사용시설 ⇒ 30(12)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 다)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 24(12) 0이하
	염화수소 (ppm)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 15(12) 0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 20(12) 0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 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 11(12) 0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 15(12) 0이하
	황산화물 (SO ₂ 로서) (ppm)	9)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9)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 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

		<p>⇒ 30(12) 이하 L)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40(12) 이하 D)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50(12) 이하</p>	<p>로그램) 이상인 시설 ⇒ 20(12) 이하 L)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30(12) 이하 D)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35(12) 이하</p>
질소산화물 (NO ₂ 로서) (ppm)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 인 시설 ⇒ 70(12) 이하 L)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 인 시설 ⇒ 90(12) 이하	<p>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 인 시설 ⇒ 55(12) 이하 L)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 인 시설 ⇒ 65(12) 이하</p>	<p>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 인 시설 ⇒ 55(12) 이하 L)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 인 시설 ⇒ 65(12) 이하</p>
이황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 30 이하	모든 배출시설 ⇒ 10 이하	모든 배출시설 ⇒ 8 이하
포름알데히드 (ppm)	모든 배출시설 ⇒ 10 이하		
황화수소 (ppm)	<p>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2(12) 이하 L) 소각용량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10(12) 이하</p>	<p>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2(12) 이하 L) 소각용량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4(12) 이하</p>	<p>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2(12) 이하 L) 소각용량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4(12) 이하</p>
불소화합물 (F로서) (ppm)	<p>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2(12) 이하 L) 소각용량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3(12) 이하</p>		
시안화수소 (ppm)	2) 그 밖의 배출시설 ⇒ 5 이하		2) 그 밖의 배출시설 ⇒ 4 이하
벤젠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은 제외)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	

	(ppm) 한다. → 10 이하	장시설은 제외한다. → 8 이하
페놀화합물 (C ₆ H ₅ OH) (ppm)	모든 배출시설 → 5 이하	모든 배출시설 → 4 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mg/Sm ³) (ppm)	3) 페수·페기물·페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령 연료제품 사용시설 → 0.08(12) 이하	3) 페수·페기물·페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령연료제품 사용시설 → 0.06(12) 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1) 페수·페기물·페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령 연료제품 사용시설 → 0.25(12) 이하	1) 페수·페기물·페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및 고령연료제품 사용시설 → 0.2(12) 이하
다클로로메탄 (ppm)	모든 배출시설 → 50 이하	모든 배출시설 → 38 이하

2. 입자형태의 물질(공통적용 기준)

내용	대기오염물질	현황	연구용역 조안(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별표8)	3) 페수·페기물·페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2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30(12) 이하 (3)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40(12)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 페수·페기물·페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16(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24(12) 이하 (3)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32(12)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p>⇒ 10(12) 0이하</p> <p>(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20(12) 0이하</p> <p>(3)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20(12) 0이하</p>	<p>⇒ 10(12) 0이하</p> <p>(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20(12) 0이하</p> <p>(3)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20(12) 0이하</p>
	카드뮴화합물을 (Cd로서) (mg/Sm ³)	<p>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0.02(12) 0이하</p> <p>(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 0.1(12) 0이하</p> <p>(3)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0.2(12) 0이하</p>	<p>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0.02(12) 0이하</p> <p>(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 0.08(12) 0이하</p> <p>(3)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0.15(12) 0이하</p>
	납화합물을 (Pb로서) (mg/Sm ³)	<p>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0.2(12) 0이하</p> <p>(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 0.5(12) 0이하</p> <p>(3)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1(12) 0이하</p>	<p>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 0.2(12) 0이하</p> <p>(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 0.4(12) 0이하</p> <p>(3)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 0.8(12) 0이하</p>
	크롬화합물을 (Cr로서) (mg/Sm ³)	<p>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 0.3 0이하</p>	<p>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 0.2 0이하</p>
	구리화합물을 (Cu로서) (mg/Sm ³)	<p>모든 배출시설 ⇒ 5 0이하</p>	<p>모든 배출시설 ⇒ 4 0이하</p>
	아연화합물을 (Zn로서) (mg/Sm ³)	<p>모든 배출시설 ⇒ 5 0이하</p>	<p>모든 배출시설 ⇒ 4 0이하</p>
비산먼지		<p>2) 그 밖의 배출시설</p>	<p>2) 그 밖의 배출시설</p>

	(mg/m ³)	⇒ 0.5 0 $\bar{\sigma}$
		⇒ 0.4 0 $\bar{\sigma}$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안) 설정연구」 관련 대책회의 참가신청서

■ 대책회의 참가자

업체명	참 가 자			연락처 (핸드폰)
	부서명	직 위	성 명	

위와 같이 「2020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안) 설정연구」 대책회의에 참가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 10.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귀중